

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478호
2. 발 의 자 : 이종배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2. 6.
4. 회부일자 : 2023. 2. 9.

II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조문상의 “이용자” 를 “이용자 등” 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.
3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종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478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2조는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·시설의 ‘이용자’를 ‘이용자 등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「주차장법」에서는 부설주차장을 “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(제2조제1호다목)”¹⁾으로 규정하고 있고,

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교육청 등의 부설주차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물(從物)로서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의 이용·관리에 있어 실제 시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인의 이용시 별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,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가. ~ 나. (생략)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시설의 ‘이용자’ 를 ‘이용자 등’ 으로 하여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정의 상태에 대해 조례를 맞춰주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회신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20.,2023.2.13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준석 2180-8263	입법조사관	정진국 2180-8265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

관계법령

주차장법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62호, 2021. 12. 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 - 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 - 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2. “기계식주차장치”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.
3. “기계식주차장”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.
4. “도로”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.
5. “자동차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6. “주차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.
7. “주차단위구획”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.
8. “주차구획”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.
9. “전용주차구획”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(輕型自動車)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.
10. “건축물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11. “주차전용건축물”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2. “건축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(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13. “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”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.